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40 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이종배·김민전·김미애

안철수 · 성일종 · 신동욱

이종욱 · 김소희 · 나경원

강승규 · 서천호 · 최은석

박대출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복수의 출점 제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사실 상 자영업 및 중소유통, 소상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더 이상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 도록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% 이하 인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는 적절하지 않고, 법률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 음. 이에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, 소상인에 해당하는 준대규 모점포는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코자 함.

주요내용

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, 공사비 및 설비비 등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함(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다목 중 "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체인사업의"를 "체인사업의"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라.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 나목에 따른 프 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서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,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점포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준대규모점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제12조의2에 의하여 처분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, 기존의의무휴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"준대규모점포"란 다음 각	4	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			
는 것을 말한다.			
가.·나. (생 략)	가.•나. (현행과 같음)		
다.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	다		
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			
에 따른 직영점형 <u>체인사</u>	<u>체인사</u>		
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	업의		
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			
<u>의</u>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			
<u><신 설></u>	라.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		
	는 계열회사가 제6호나목		
	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		
	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		
	점포로서 점포 개업에 드		
	는 임차료, 공사비 및 설		
	비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		
	으로 정하는 총 비용의 10		
	 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		

	하는 점포
5. ~ 16. (생 략)	5. ~ 16. (현행과 같음)